

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3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7. 0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7. 05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7. 1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개정이유

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인한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

- 「주민투표법」상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 삭제에 따른 정비
- ‘거소’ 및 ‘국내거소신고번호’ 표현 삭제

나.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

- 「주민투표법」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

다.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

-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(안 제8조제1항)
-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(안 제10조제2항)

라. 리·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(안 제8조제2항)

마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
-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화(안 제1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주민투표법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19930(2023. 5. 18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846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22. ~ 2023. 6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가. 개정 취지(필요성)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(법률 제18849호, 2023.4.27. 시행)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사항 반영

- 주민투표 대상 삭제

-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 제4조로 규정하였으나, 개정된 「주민투표법」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함.
- 「주민투표법」 제7조제2항의 제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가능하여 사실상 주민투표 대상 범위가 확대됨.

-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반영(안 제6조, 안 제8조)

- 현행 조례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만 가능하나 개정된 「주민투표법」에 따라 전자적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.

○ 「주민투표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규정

- 외국인 주민투표권(안 제3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음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규정

- 투표청구 주민 수(안 제4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7분의 1로 규정

◦ (참고)경남 도내 시군의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

시	창원	진주	김해	양산	통영	거제	사천	밀양	
청구인수	1/14	1/14	1/13	1/11	1/10	1/10	1/9	1/9	
군	산청	함양	거창	창녕	의령	함안	남해	하동	합천
청구인수	1/12	1/10	1/10	1/8	1/7	1/7	1/7	1/7	1/9

- 서명 요청기간(안 제7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 요청 기간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로 규정

- 청구인서명부 작성(안 제8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의회 동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청구인서명부를 리·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.

- 보정기간(안 제12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서명의 무효로 청구요건(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)에 미달한 때 청구인에게 10일의 기간으로 보정하도록 규정
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안 제14조 ~ 안 제18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운영사항 외 의장의 직무, 회의, 간사, 수당 등 심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규정

- 투표운동의 제한(안 제19조)

- 「주민투표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조례로 정함.
- 야간 호별방문 금지 오후 8시~다음날 오전 8시, 야간 옥외집회금지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7시

○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다. 종합의견

- 상위 법령인 「주민투표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7. 12. 원안 가결함.